

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방안

■ 연구 배경	4
■ 품질관리 시설 및 기술인 배치기준 현황 및 문제점	6
■ 건설기업 설문조사 결과	11
■ 해외 주요국 사례	17
■ 제도 개선 방향	23

연구 배경

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을 제정하고, 발주자와 시공자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의무를 규정하였음.

이후 개정을 거쳐 건설사업자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와 대상 공사 범위,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품질관리 시설 및 관리자 배치기준이 규정됨.

-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규모 및 연면적에 따라 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구분됨.

2006년 정부는 건설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¹⁾, 품질관리자 업무 전문성 취약 등을 이유로 **2012**년 다시 배치기준을 상향한 바 있음²⁾

- 2006년 시험실 규모를 100㎡ 이상에서 50㎡ 이상으로,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, 2012년 특급·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배치기준을 3인 이상으로 상향함.

현행 「건설기술진흥법」은 발주자 승인시 인접한 유사 공종 현장의 통합 품질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며, 품질시험 및 관리 업무의 외부 대행의 정도에 따라 시험실 규모와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승인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.

- 발주청이나 인·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.³⁾
- 또한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 종류, 규모, 현지 실적과 국·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시험·검사대행 정도를 고려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배치 인력 조정이 가능함.⁴⁾
- 다만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사·공무와 독립(겸임금지, 조치요구권 부여 등)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⁵⁾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규칙의 통합관리 대상에 품질관리 기술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.⁶⁾

품질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배치 필수 인력인 안전관리자의 경우 착공 및 준공 시점의 특정 기간에 한해 배치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, 품질관리자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.

- 품질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, 실제 소요비용과 비교해 과소 계상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.

또한 품질관리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 규모를 정함에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영향을